

【 18 】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9. 25.

제출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1995. 12. 29 법률 제5101호)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부합되게 용어를 정리하고,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보건사회부령 규칙이 폐지되고 환경부령(환경부령 제11호 '95. 7. 1)이 공포됨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변경 함. (안 제1조)
- 나. "보건사회부령"을 "환경부령"으로 개정함. (별지 4,5,6호서식)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진료수가)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4(시험성적서의 교부) 제1항중 별지 제4, 5, 6호서식 검사

방법의 “보건사회부령 제791호(86. 7. 10)”을 “환경부령 제11호

(95. 7.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 제14조</u> ----- -----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u>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u>	제3조(진료수가) ----- <u>보건복지부</u> ----- -----
(별지제4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 -----
검사방법 : <u>보건사회부령 제791호('86.7.10)</u> 에 준하여 시험함	----- : <u>환경부령 제11호 ( 95. 7. 1)</u> -----
(별지제5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 -----
검사방법 : <u>보건사회부령 제791호('86.7.10)</u> 에 준하여 시험함	----- : <u>환경부령 제11호 ( 95. 7. 1)</u> -----
(별지제6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 -----
검사방법 : <u>보건사회부령 제791호('86.7.10)</u> 에 준하여 시험함	----- : <u>환경부령 제11호 ( 95. 7. 1)</u> -----

地 域 保 健 法	지 역 보 건 법 사 행 령	지 역 보 건 법 시 행 규 칙
<p>2.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市·道知事 또는 市長·          郡守·區廳長이 稅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异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          3項의 規定에 의하여 异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자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异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準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附 則	부 칙	부 칙
<p>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保健所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保健所·保健醫療院 또는 保健          支所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保健所·保健醫療院          또는 保健支所로 본다.          第3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외한다)은 1998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시행계획의 제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인력등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전문          인력등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p>

地 城 保 健 法	지 역 보 진 빙 시 행 령	지 역 보 진 빙 시 행 규 칙
<p>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u>藥事法</u>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p> <p>第21條第5項第7號中 “保健所法”을 “地域保健法”으로 한다.</p> <p>②<u>醫療法</u>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p> <p>第52條第1項第2號中 “保健所法”을 “地域保健法”으로 한다.</p> <p>③<u>醫藥技士등에관한法律</u>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p> <p>제21條第1項第2號中 “保健所法”을 “地域保健法”으로 한다.</p>	<p>최초로 수령하는 지역보진의료개혁 및 그 인자인 시행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1997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p> <p>제4조(보진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진 소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보진소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제1호중 “보진소법”을 “지역보진법”으로 한다.</p>	

환경부령 제11호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제26조와 수도법 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검사방법 및 검사횟수와 관련종사자의 건강진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①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돗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의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수질검사 신청) ①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

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 횟수) ①수도법 제19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 1) 별표 1중 냄새·맛·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이상
- 2) 별표 1중 일반세균·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  
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  
한 검사 : 매주 1회이상
- 3)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월 1회이상

#### 나. 수도전에서의 검사

- 별표 1중 일반세균·대장균군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  
사 : 매월 1회이상

### 2.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의 경우

- 별표 1중 냄새·맛·색도·탁도·일반세균·대장균군·암

모니아성질소 및 질산성질소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 이상

② 먹는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트리할로메탄 검사를 제외한다) : 매년 1회이상
2. 별표 1중 일반세균·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추출되는 수도전에 대하여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사업자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진단) ①먹는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과 수도법 제20조에 규정한 자는 장티프스·파라티프스 및 세균성이질 병원체의 감염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근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생된 전염병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염병에 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먹는샘물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송시설에 종사하는 자 및 수도법 제20조에 규정한 자 : 매 6월마다 1회
  2.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물제조업에 종사하는 제1호 외의 종업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관할보건소 또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 ③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제1항의 질병으로 한다.

제6조(수질검사결과의 보고)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전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사업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실시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성적서등의 보존) ①일반수도사업자·전용상수도사업자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먹는샘물제조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3호 중 카목 내지 거목의 검사기준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

[1971. 1. 15]  
조례 제1384호]

- 개정 1977. 7.27 조례 제 557호
- " 1980. 7. 1 조례 제 682호
- " 1982.10.21 조례 제 866호
- " 1989. 6. 1 조례 제1271호
- " 1989.11. 1 조례 제1290호
- " 1989.12.21 조례 제1297호
- " 1993.12. 9 조례 제1469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 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 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 3 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 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정수한다.

**제 4 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 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사회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의1(공중 목욕장 수질검사)** 공중목욕장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의2(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2”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

## 제17편 보건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

수 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제3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의3(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3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3호”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3호”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서에도 또한 같다.

③ 검사시험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와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조의4(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5조의2 및 제5조의4에 의거 검사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 5, 6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 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제 5 조5(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 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5조5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5조의4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조의7(검사시험 불용)**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에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에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기타 수가)** 의료보험진료 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 7 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호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 수가를 가산 한다.

**제 8 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①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 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제 9 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4.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5.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977. 7.27 조례 제 557호)

① (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 보건소 수가조례(1971. 1.15 조례 226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1980. 7. 1 조례 제 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2.10.21 조례 제 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9. 6. 1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9.11. 1 조례 제1290호)

제17편 보건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2.21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 9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입 원 서 약 서

입원년월일	병 석	호 실	등 급	입원보증금	퇴원예정일

본 적 :

주 소 :

성 명 :

직 업 :

위자는 금번 귀 보건소에 입원 치료를 요함에 있어 입원증 귀준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고 제반 요금등을 지정 기일내에 지체없이 납부함은 물론 치료상에 있어서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타 본인의 신상 일체를 인수키로 보증인 연서로 서약함.

년 월 일

위 본인

①

보증인주소

성 명

①

제17편 보건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

(별표)

## 공중목욕장 검사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수 수 료	비 고
○ 성상시험		
• 수소이온 농도	380	
• 투 시 도	380	
• 색      도	380	
○ 용해성 성분 시험		
•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2,000	
○ 세균 시험		
• 대 장 균	3,790	

(별표1)

## 제증명발급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1통당	수수료
1. 보통진단서	"	500
2. 특별진단서(요양신청, 병사, 상해진단용)	"	2,000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	5,000
4.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	2,000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	500
6. 성별 및 나이 감정서	"	2,000
7. 사망진단서	"	500
8. 기타 증명 및 기발급 증명서 사본	"	300
9. 시험성적 사본	"	500
10. 1통 추가발급	"	100
11. 근로자 건강진단서	"	500

## 검사시험용 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

(별표2)

검사시험종별	시험용검체소용량	처리기간
수질검사	물 3ℓ 이상	7 일

(별지제2호서식)

## 시 험 의 뢰 서

품 명	시험목적	검체수량	시험성적서	용도및매수	수수료	비 고

위 시공품을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의뢰자 주 소 :

업소명 : (전화 : )

성 명 : ①

양주군보건소장 귀하

(별표3)

## 검사시험 항목 및 수수료

음 용 수		공 중 목 용 장 (원 수)		공 중 목 용 장 (욕 수)	
검사시험 항 목	수수료	검사시험 항 목	수수료	검사시험 항 목	수수료
합 계	원 12,310	합 계	원 6,930	합 계	원 6,710
1. 암모니아성질소	2,000	○ 성상시험		○ 성상시험	
2. 질산성 질소	2,000	- 수소이온 농도	380	- 탁 도	
3. 색 도	380	- 색 도	380	○ 용해성 성분시험	380
4. 탁 도	380	- 탁 도	380	- 과망간산칼륨	
5. 냄 새	380	○ 용해성 성분시험		소비량	2,000
6. 맛	380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000	○ 세균시험	
7. 일반세균	3,000	○ 세균시험		- 대장균	
8. 대장균	3,790	- 대장균	3,790		3,790

제17편 보건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

(별지제3호서식)

시 험 의 뢐 접 수 증

건 명 :

의 뢐 자 :

수 수 료 : 원

완료예정일자 : 19 년 월 일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19 년 월 일

양 주 군 보 건 소 장

○○○ 귀하

(별지제4호서식)

##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검물명:

시험목적:

채수장소:

의뢰자주소:

성명:

접수년월일: 19 년 월 일

채수년월일: 19 년 월 일

검사방법: 보건사회부령 제791호('86. 7.10)에 준하여 시험함.

비고: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 시 험 결 과

시 험 항 목	기 준		시 험 성 적	
색도(Color)	5도이하			
탁도(Turbidity)	2도이하			
냄새(Odor)	무취	소독으로 인한 냄새, 맛 제외		
맛 (Taste)	무미			
암모니아성질소(HH2-N)	0.5mg/ ℥ 이하			
질산성질소(HO3-N)	10mg/ ℥ 이하			
일반세균수(1cc중)	100이하			
대장균군(50CC중)	음 성			
판정:				

19 년 월 일  
양 주 군 보 건 소 장

(별지제5호서식)

##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 :

시험 목적 :

채수 장소 :

의뢰자주소 :

성 명 :

접수년월일 : 19 년 월 일

채수년월일 : 19 년 월 일

검사 방법 : 보건사회부령 제791호(86. 7.10)에 준하여 시험함.

비 고 :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 시 험 결 과

시 험 항 목	기 준	시 험 성 적
수소이온농도	5.8 - 8.5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ppm이하	
색 도	5도이하	
탁 도	2도이하	
대장균군(50cc중)	음 성	
판 정 :		

19 년 월 일

양 주 군 보 건 소 장

제17편 보건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

(별지제6호서식)

##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 :

시 험 목 적 :

채 수 장 소 :

의뢰자주소 :

성      명 :

접수년월일 : 19      년      월      일

채수년월일 : 19      년      월      일

검사방법 : 보건사회부령 제791호 (86. 7.10)에 준하여 시험함,

비      고 : 이 검사 성적은 시험의뢰 목적이 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 시      험      결      과

시      험      항      목	기      준	시      험      성      적
탁      도	3도이하	
과만간산칼륨 소비량	25ppm이하	
대장균군(1cc당)	1마리이하	
판      정 :		

19      년      월      일

양      주      군      보      건      소      장